



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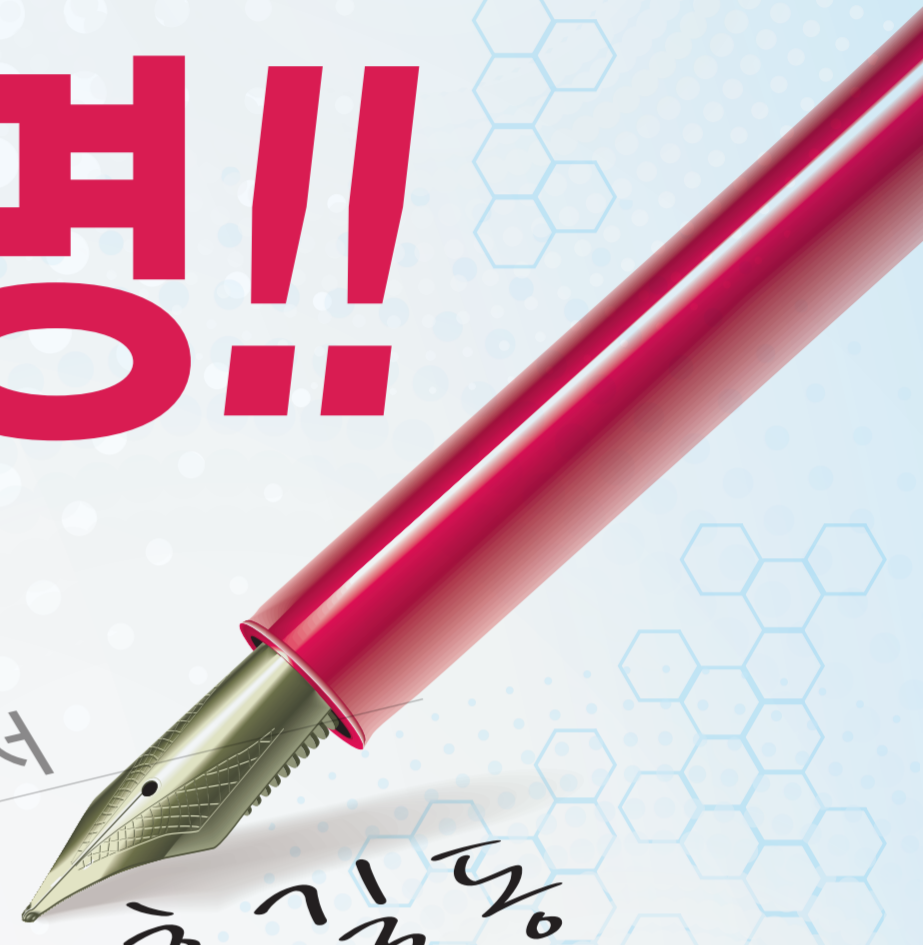
서명!!



아직도 장농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한자)	()	서명	이영희
주민등록번호	소	성명(본인명)	주소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거래상대방(매수자 등)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발급 신청자
그 외의 용도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수료	20년
위임받은 사람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수료	20년
비고	발급번호	수료	20년

위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